

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(내국법인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신청인

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
대 표 자 성 명		업 태 · 종 목	
소 재 지			

2. 환급신청 명세

①결손 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	②직전전 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
		③직전 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
④결손 사업연도 결손금액	⑤결손금액		
	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(=⑦+⑧)		
		⑦직전전 사업연도 :	
		⑧직전 사업연도 :	

구 분		직전전사업연도	직전사업연도	합 계
법 인 세 액 계 산	⑨과세표준			
	⑩세 율			
	⑪산출세액			
	⑫공제감면세액			
	⑬차감세액(⑪-⑫)			
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	⑭법인세액(=⑪)			
	⑮차감할 세액[$\{⑨-(⑦, ⑧)\} \times \text{세율}$] [⑮ $\geq$ (⑪-⑬)]			
	⑯환급신청세액(⑭-⑮)(⑯ $\leq$ ⑬)			

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	⑰예 입 처	은행 (본)지점
	⑱예금종류	
	⑲계좌번호	예금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(법 인)

신청인(대표자)

년 월 일

(인)

(서명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.

1. ⑤결손금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 : 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,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,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 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⑩・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.
5. ⑪산출세액란 : 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 :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⑪산출세액란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⑮차감할 세액란
 - 가.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, 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- 나.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, 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9.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, 공제감면세액(⑫)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.